

광진구체육회 회비 규정

광진구체육회 2020년 12월 30일 개정
광진구체육회 2019년 7월 08일 개정
광진구체육회 2019년 4월 15일 개정
광진구체육회 2019년 1월 28일 제정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정 제41조 1호에 의거하여 체육회의 회비 납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비의 분담액은 각 호와 같고 당연직 임원은 면제한다.

1. 회 장 : 년 1,000만원 이상
2. 수석부회장 : 년 500만원 이상
3. 부 회 장 : 년 200만원 이상
4. 이 사 : 년 120만원
5. 회원단체 회비
 - 종목단체 : 정회원단체 년 60만원, 준회원단체 30만원
 - 동체육회 : 년 20만원
6. 직장운동경기부 : 면제

제3조(회비의 조정) ① 회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 7월 이후 선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2조 회비를 1/2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회비의 납입) ① 회비는 당해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내에 납입하거나 매월 분납하여야 한다.

② 보선 또는 새로 선임되는 이사는 이사회 의결 전 이력서와 회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사회 미승인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제5조(회비의 사용)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종목단체 및 직원에 대한 격려금 또는 포상금[별표 1]
2. 사무국 직원의 법정부담금(사무국장 포함)
3. 각종 위원회 업무수행 실비(위원회 참석수당 등)
4. 체육회 사무국 운영 또는 사업비
5.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결정한 사항
6. [체육회 예·결산 후 감사 실비 지급 <신설 2020.12.30.>](#)

② 체육회 사무국장 대회 업무추진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지급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회비 미납자에 대한 징계) ① 회비 미납자는 이사회에서 표결권 및 발언권을 제한한다.

②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이 초과됨에도 미납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임원은 제명조치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회원단체는 제4항을 준회원단체는 제5항을 적용한다. 단, 사무국은 미납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납부안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3회차에는 제명조치됨을 명기한 후 통보한다.

③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제명된 자는 체육회에 5년간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총회에 대의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④ 정회원단체인 종목단체의 회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해당 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되며, 체육회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해당 단체 임원은 지정 즉시 당연 해임된다.

⑤ 준회원단체인 종목단체의 회비가 미납되었을 시 해당 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단체로 지정한다.

제7조(회비 지출업무 처리) ① 회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분서 및 지출결의서

2. 증빙서류(계좌입금증, 영수증, 견적서, 타견적서 등)
- ② 격려금과 포상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금 지출시에는 수령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구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 적립하여 운용한다.

제9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9.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회비 납입 기산일은 이사회에서 이사회비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2019년도 회비는 연간 납부액을 승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할계산 납부한다.

③ 정회원단체 회비는 체육회에서 정회원단체로 승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전 이사회비는 결손처리 하고, 정회원단체(종목단체)의 미납회비는 기존 관례상 납부한 금액(연 60만원)을 이 규정 시행일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4.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동체육회 회비는 체육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제4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제6조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7.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격려금 및 포상금 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1. 격려금	◦ 체육인의 밤 우수단체 격려금 : 단체별 500,000원 이내
	◦ 체육인의 밤 우수직원 격려금 : 개인별 200,000원 이내
	◦ 정회원단체 대회 개최시 : 500,000원 이내
	◦ 준회원단체 대회 개최시 : 300,000원
	※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배) 활성화를 위해 종목의 규모 및 활성화에 따라 차등지원 함
2. 기타 포상금	◦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통한 기타포상금